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9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	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5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지정취소 및 국가의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운영되어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인증기관이 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22년 6월 제정·시행되었음.

2023년 4월부터 정부는 인증기관 전환의 활성화 등 현행법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사서비스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운영방식	공개 경쟁(공모)을 통해 전문성이 축적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협상 후 위탁계약 체결	
사업내용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인증기관 및 가사근로자 수요조사, 고충처리·법률 상담 결과 등에 기반하여 자체 특화 훈련과정(청소·세탁·음식조리, 돌봄·양육 등 직무교육, 고객응대·노동권·안전보건 교육) 설계
	고충처리·법률상담	공인노무사 등 활용하여 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인증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고충·법률문제(가사근로자법 및 노무관리, 4대보험·연차·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담
	가사근로자법	가사근로자가 ‘당당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홍보·캠페인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상승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지자체·지역 유관 기관 연계 및 협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 인증과 연계하여 확산 유도
운영예산	500백만원 (250백만원(부가세 포함) × 2개소)	

개정안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후에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재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역량이나 전문성 등을 평가한 후 적합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협상 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유연한 운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법률에 센터의 명칭,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은 지정된 기관의 도덕적 해이, 비효율적 운영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매년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